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윤건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6. 3.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8.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강명구)

보험이나 공제 계약의 체결 거부뿐만 아니라 해제·해지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재난 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 거부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안 제33조제3항, 제43조제1항제4호), 현행법과 같은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유·도선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부칙에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함과 동시에 이 법 시행 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관련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33조제3항 중 “사유를 제외하고는”을 “사유 없이 보험이나 공제
의 가입 요청 또는”으로, “체결을 거부할”을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로 한다.

안 제43조제1항제4호 중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위반하여 보험
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보험이나 공제의”로, “체결을 거부한”을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공제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7

조제9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u>	
제43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 ----- ----- ----- -----.	제43조(과태료)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 음)	1. ~ 3.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4. <u>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 사업기관</u>	4. ----- <u>위반하여 보험이 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보험 이나 공제의----</u> ----- <u>체결·갱신을 거 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u>	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2조(보험·공제 계약

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

3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

거나 담보로 제공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

칙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7조제9

호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

		<u>정처분 및 벌칙을</u> <u>적용할 때에는 중</u> <u>전의 규정에 따른</u> <u>다.</u>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공제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7조제9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협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개선명령 등)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예의 가입 10. (생략) 제33조(보험 등예의 가입)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u><삭제></u> 10. (현행과 같음) 제33조(보험 등예의 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u> ④ <u>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u> 제41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제43조(과태료) ①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u> ② (현행과 같음)
---	---